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건의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년 1월 28일

청 원 인

성 명 : 허정욱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허정욱 (인) 외 17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건의서

청원인	주소 : _____
	성명 : 허정욱
건명	대외무역법 제 33조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6년 1월 28일

소개의견

청원인 허정욱 외 8인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외교통상위원회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여러 가지 식품 및 가공품에 관한 원산지 표기법과 가공지 표기법을 살펴보던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으로 인해 몇몇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식품들과 가공품이 원재료가 국산이 아니더라도 가공을 대한민국에서 한다면 국산으로 표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품목들은 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외무역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이 요청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는 대통령령이 지정한 단순 가공활동을 거친 식품 및 가공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은 별다른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 제 33조에 6항을 신설하여 개정합니다.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문
<p>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p> <p>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 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p>	<p>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p> <p>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 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p>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⑥물품의 원재료의 생산지와 전체적인 가공활동(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단순 가공활동을 제외한 가공활동)을 진행한 국가가 다른 경우 원산지와 별도로 생산지와 가공지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외의 가공지를 표기하는 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원산지의 판정기준)에 입각하여 표기한다.

청원서

1. 제안이유.

한국농업신문이 조사한 원산지 및 가공지 표기 관련 기사이다.

지난 10월 수입쌀을 섞고도 '국산 쌀 100% 막걸리'로 표기한 업체가 구속됐다. 5년간 쌀 원산지를 속인 막걸리 업체 63곳도 적발했다. 하지만 외국산 쌀을 섞어서 만든 막걸리에 '국내산 백미 100%'라고 써서 판매하던 업체가 최근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업체는 막걸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입국(누룩)'을 만들면서 미국산 쌀을 사용했다. 현행 규정상 이 입국(누룩)은 식품첨가물로 분류돼 있다. 식품첨가물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상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외국산 쌀을 국산의 절반이나 사용하고도 국산만 사용하는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정만으로는 별도 입법 없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 주요골자

□대외무역법 제 3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중간생략>

⑤물품의 원재료의 생산지와 전체적인 가공활동(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단순 가공활동을 제외한 가공활동)을 진행한 국가가 다른 경우 생산지와 가공지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문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중간생략> ⑥물품의 원재료의 생산지와 전체적인 가공활동(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단순 가공활동을 제외한 가공활동)을 진행한 국가가 다른 경우 생산지와 가공지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외의 가공지를 표기하는 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원산지의 판정기준)에 입각하여 표기한다.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